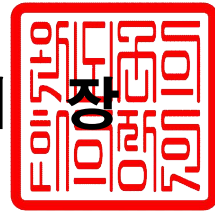


## 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완 도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2. 발 의 자 : 조 영 식 의원

3. 제정이유

-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안 제4조, 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6조, 안 제7조)

#### 5. 관련법령 :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 6. 조례안예고기간 : 2025. 4. 14. ~ 2025. 4. 18.

#### 7.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회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지원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32, FAX: 061-550-5907)

#####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전화: 061-550-5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청소년·청년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현황 및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3.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학습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의 지원

6.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 이후에도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발굴과 원활

한 지원을 위하여 완도교육청,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것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